



의안번호	제140호
회의 연월일	2024. 9. 2. (제547회 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(대통령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4. 8. 22.

교통기획과장, 교통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(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)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‘기능·법령·점검·도로주행’ 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나, 실제 운전경력에 대한 증빙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7년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시험이 면제되는 등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
이에,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신청자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3.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(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)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(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)	제84조제1항제6호	제1종 보통면허	기능·법령·점검·도로주행
--	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

별표 3 비고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위 표 제13호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에 대한 증명자료는 경찰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